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 제 안 보 를 위 한 공 급 망 안 정 화
지 원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공급망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하며,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성
별을 고려하며, 공급망 현황조사 및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대상
기관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경제 안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기획예산처장관

제10조제2항 중 “10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을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외무역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

5.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제35조제1항제1호 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대외무역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
9.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17.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 -----.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u>1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⑦ (생략) <u><신설></u>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20명</u>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u>⑧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u>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3. (생략)

<신설>

<신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의 작성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생략)

3. 한국수출입은행

-----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 (현행과 같음)

4. 「대외무역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

5.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

-----.

1.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현행과 같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

4.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8.</u> (생략) ② (생략)	<u>른 한국수출입은행</u> 4. ~ 7. (현행과 같음) <u>8. 「대외무역법」에 따라 설립</u> <u>된 무역안보관리원</u> <u>9. 「방위사업법」에 따라 설립</u> <u>된 국방기술품질원</u> <u>10.</u>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공급망정책담당관	
연 락 처	(044) 215 - 7872